

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#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육미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1년 4월 13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도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, 마을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적절한 육성·지원을 통하여 도민의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 역할과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정의 - 마을공동체 미디어(안 제2조)
- 기본원칙 및 도지사 책무(안 제3조)
-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(안 제5조)
-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센터 설치·운영(안 제6조)
- 우수콘텐츠의 활용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적절한 육성·지원을 통하

여 도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 역할과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정의를,
- 안 제3조에서는 충청북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지원을 정함.
- 안 제6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,
- 안 제9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,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단체,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고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와 민주적 의사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. 끝.